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74

발의연월일: 2021. 4. 14.

발 의 자:이상헌・김민석・김성주

김정호 • 문진석 • 송영길

신동근 • 신정훈 • 안민석

윤관석 • 이규민 • 이용호

임오경 • 전용기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생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.

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약 1,200만명임.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고 청소년 학업중단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 또한 성장기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장려해야 한다는 담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음.

이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

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"학교 밖 청소년"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 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(안 제13조). 법률 제 호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"및 직장의 학생·직원"을 "·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· 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"학 교 밖 청소년"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직원"으로, "및 직장에 학생· 직원"을 "·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·청소년·직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3조(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) 제13조(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 및 직장의 학생·직원,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 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"학교 밖 청소년"을 포함한다. 생·직원,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이하 같다)·직원-----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-----<u>•청소년단체</u> 및 직 하며,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 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장에 학생·청소년·직원-----수 있다.